

#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 법률 제7296호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친환경 상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친환경상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①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속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3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2.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장
  4.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5. 1인의 환경부 3급 이상 공무원
- ④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4.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 ·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 · 도지사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집계 · 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 · 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 · 도지사는 시 · 군 · 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 · 광역시 · 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또는 시 · 군 · 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 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 · 도 또는 시 · 군 · 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

#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①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친환경상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진흥원) ①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및 판단기준의 개발
3. 상품의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업무

4.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교육·홍보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정부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친환경상품 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친환경상품관련 정보의 요청) ①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친환경상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4. 국내·외 친환경상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6조·폐기물관리법 제52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 선심정책 '서남해안개발사업'을 재검토하라

정부와 전남도가 영암, 해남지역에 관광레저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철저한 보안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대형 국책사업이 초기단계에서 개발로 인해 발생할 환경파괴, 지역주민 반발 등의 문제점들을 배제하고 진행되면서 발생한 국민혈세 낭비는 심각한 상태이다.

서남해안 레저관광도시 계획인 J프로젝트는 천만평에 달하는 녹색사막으로 불리는 골프장,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도박장인 카지노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골프산업은 이웃 일본에서 장기 불황으로 거의 대부분이 파산했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은 14개중 11개가 만성적자에 파산 직전인 상태이다. 이런 난개발에 따른 지역, 환경, 생태계의 피해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며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한 국책사업의 진행과정을 보았을 때 없다.

이곳에 적용될 기업도시 특별법은 대상기업이 협의에 의해 50%의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노인들로 구성된 지역주민을 대책없이 쫓아내게 된다.

지역주민을 내쫓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또한 서남해안 천혜의 관광자원이 콘크리트로 덮은 관광지가 된다면 생태관광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

정부가 특혜처럼 주는 이 사업은 노태우 정권이 공약 한 '해남화원국민관광단지' 사업처럼 시작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사기극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남의 인구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50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정부와 전남도는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환경파괴를 최소화한 생태관광을 육성해야 한다.

• 정부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을 전부 공개하라

• 정부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공개하라.

• 정부는 골프장, 카지노 사업이 아닌 생태관광특구를 지정하라.

• 정부는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경제부양책을 만들어라.

• 전남도는 J프로젝트 계획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라.

2005. 1. 19.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 장흥, 보성, 순천, 여수, 광양),  
청계만 어업보상대책위, 진도환경운동협의회, 해남  
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

##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40여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용담댐 대책위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가 진안군, 주민협의체, 수자원공사 등과 2006년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예하기 위한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유예 조치는 수질 오염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유예는 지난 98년과 99년 각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옥정호와 부안댐 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북도는 용담댐 수질이 지난 2002년 담수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다 지역 주민의 수질보전 의지가 강해 애초 이달 내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2년 간 미룰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담댐 주변의 진안군과 장수군, 무주군 등 3개군, 14개 읍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보다 규제가 덜한 기존의 수변구역으로 남아 주민 협의체의 관리를 받게 된다. ◀